

#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44
----------	-----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전선사박물관의 소관 사무로 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 및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장을 대전선사박물관장으로 함(안 제4조).
- 나.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다.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의 자료구입에 대하여는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제18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7. 6. 8. ~ 6. 18. / 접수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으로 한다.

제2조중 “사료관”을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체육국장”을 “대전선사박물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①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료관의 자료구입에 대하여는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개관 및 휴관) ①사료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

2. 관장이 사료관 운영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관장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사료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사료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9시부터 19시까지

2. 11월 ~ 2월 : 9시부터 18시까지

제명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향토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역사의 고증 자료와 문화예술 및 민속유품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고 향토사를 조사 연구하여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향토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u>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u></p>	<p>제1조(목적) ----- ----- ----- ----- ----- <u>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u> ----- -----</p>
<p>제2조(위치) <u>사료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45-3번지에 둔다.</u></p>	<p>제2조(위치) <u>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u> ----- -----</p>
<p>제4조(관장) ① (생략) ②관장은 <u>문화체육국장이 겸임한다.</u> ③관장은 <u>시장의 명을 받아 사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u></p>	<p>제4조(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u>대전선사박물관장</u>----- <u>&lt;삭제&gt;</u></p>
<p>제5조(위원회) <u>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유물 수집 및 진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받는다.</u></p>	<p>제5조(위원회) ①<u>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운영위원회를 둔다.</u></p>

현행	개정안
<p>제8조(소장품 구입) ①사료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또는 사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②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p> <p>제8조(소장품 구입) ①사료관의 자료 구입에 대하여는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개관 및 휴관) ①사료관의 개관은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휴관일이 아닌 날 개관한다.</p> <p>②휴관일은 매월 첫번째·세번째 월요일로 한다.</p> <p>③정기 휴관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p> <p>④기타 유물의 정리 및 전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p> <p>⑤사료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13조(개관 및 휴관) ①사료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p> <p>②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li> <li>2. 관장이 사료관 운영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li> </ol>

현행	개정안
<p>1.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 09:00 ~ 17:30</p> <p>2. 11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 : 09:00 ~ 16:30</p>	<p>③관장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사료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사료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1. 3월 ~ 10월 : 9시부터 19시까지</p> <p>2. 11월 ~ 2월 : 9시부터 18시까지</p>

# 현행 관련 법규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 (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990. 6. 18 조례 제2020호]

개정 1992. 4. 28 조례 제2224호

개정 2000. 6. 22 조례 제2954호

개정 2004. 3. 5 조례 제3234호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역사의 고증자료와 문화예술 및 민속유품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고 향토사를 조사 연구하여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향토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조(위치)** 사료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45-3번지에 둔다.<개정 2000.6.22 조례 제2954호>

**제3조(업무)** 사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사료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
4. 기타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①사료관에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문화체육국장이 겸임한다.<개정 2000. 6. 22 조례 제2954호>

③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위원회)** 사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유물 수집 및 진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받는다.<개정 2000. 6. 22 조례 제2954호>

**제6조** 삭제 <2004. 3. 5 조례 제3234호>

**제7조** 삭제 <2000. 6. 22. 조례 제2954호>

**제8조(소장품 구입)** ①사료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또는 사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②구입된 물품은 별지 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 및 구입대장과 소장품 사진 대장에 등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대상물)**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충남 지방과 관련이 있는 사료 또는 대전시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전시를 목적으로 위탁한 개인소장품
2. 전시를 목적으로 기증·구입·제작한 물품
3. 기타 위원회에서 전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료

**제10조(전시물품 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한다.

1. 전시관을 개관하기전에 전시관 및 전시물의 이상유무를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3. 위탁전시한 물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위탁전시물반환대장에 기록 보존한다

**제11조(전시물 안전대책)** ①전시물중 귀중한 물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삭 제 <2000. 6. 22. 조례 제2954호>

제12조 삭 제 <2000. 6. 22. 조례 제2954호>

**제13조(개관 및 휴관)** ①사료관의 개관은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휴관일이 아닌 날 개관한다.

②휴관일은 매월 첫번째·세번째 월요일로 한다.

③정기 휴관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④기타 유물의 정리 및 전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⑤사료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 09:00~17:30

2. 11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 : 09:00~16:30 <개정 2000. 6. 22 조례 제2954호>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제정 [2006. 09. 29 조례 제34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전선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대전선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
2. 대전선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박물관 운영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관장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 전에 박물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11월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제4조(관람료)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외전시장의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7. 6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8. 박물관자료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9.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대전광역시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일반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행위
2. 음식물을 먹는 행위
3.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5.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대전선사박물관운영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선사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관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전시·감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행정주사가 된다.

제16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자료구입) ①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②자료의 구입은 고시 및 박물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자료기탁) ①관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시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며, 기탁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환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자료로 처리한다.

제20조(자료관리) ①관장은 소장자료가 망실·도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구분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자료의 망실·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박물관 관람료(제4조 관련)

대 상 자	기준	금 액(원)		비 고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어 른	1회	500	400	· 25세~64세
청소년 및 군인	1회	300	200	· 13세~24세 및 하사 이하 군인
어 린 이	1회	200	100	· 7세~12세(초등학교 학생포함)